

고성군 주민투표조례안

(의안번호 제867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7. 3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7. 5

다. 상정·의결일자 : 2004. 8. 17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정이유

- 1994. 3. 16 지방자치법 개정시 주민투표에 대한 도입근거만 마련되고 구체적인 후속집행 법률이 미제정 된체로 장기간 지나왔으나, 2004. 1. 29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표의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투표대상 : 고성군과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안 제4조)
- 나. 투표청구 주민수 : 주민투표청구자 총수의 7분의 1(안 제5조)
- 다. 서명요청기간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일로부터 90일 이내(안 제7조)
- 라.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 결정통지 : 열람기간 또는 이의신청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안 제12조)
-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안 제13조)
- 바. 회의운영 :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안 제17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은 2004. 1. 29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절차 및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행정자치부 「주민투표조례표준안」에 부합되고 입법예고 등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 특히 조례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13조(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제1항 설정 불필요, 제14조 심의회의구성, 제15조 제3항 내용, 제19조 투표운동의 제한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 제3호)
-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 제4호)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심의·의결 대상에 주민투표대상의 심사·결정사항 추가(안 제13조 제5호)

8. 심사결과

- 2004. 8.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의안번호	제 867 호
의 결 년 월 일	2004. 8. 25. (제117회)

의 결 사 항	수정가결
------------	------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

제 출 자	고성군수
제출년월일	2004. 7. 3.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

의안 번호	867
----------	-----

제출년월일 : 2004. 7. 3.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안이유

1994. 3. 16 지방자치법 개정시 주민투표에 대한 도입근거만 마련되고 구체적인 후속집행 법률이 미제정 된체로 장기간 지나왔으나, 2004. 1. 29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표의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투표대상 : 고성군과 고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안 제4조)
- 나. 투표청구 주민수 : 주민투표청구자 총수의 7분의 1이상 (안 제5조)
- 다. 서명요청기간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일로부터 90일 이내(안 제7조)
- 라.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 결정통지 : 열람기간 또는 이의신청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안 제12조)
-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안 제13조)
- 바. 회의운영 :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고성군주민투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①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4.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취지 및 이유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취지 및 이유 또는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열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주민투표법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주민투표 대상의 심사·결정

제14조(심의회외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성군 소속 실·과장
2. 고성군 의회의원
3. 군관내에 주소지를 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종교인,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등 행정예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자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심의회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과 행정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⑤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고성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중 결원으로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위원회실 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